

11. 首都圈整備計劃法 施行令中 改正令(案)

1990. 5. 24立法豫告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권외곽지역에서 소규모공장설치 허용업종 및 규모를

·개발유도권역안에서는 개별공장의 자유 입지허용업종을 현재 15개외에 도시 용업종 190개를 추가하고,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허용업종을 현재 15개외에 무공해첨단산업업종 15개를 추가하며,

·개발유도·자연보전·개발유보권역안에서 는 별표 및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 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존공장 증설규모를 현재 1,000㎡이내에서 3,000㎡이 내로 확보하려는 것임.

나. 수도권내 규제대상 공장의 규모를 현재 100㎡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10인 이상에서 200㎡이상이거나 16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규모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다. 현재 수도권안에서 규제근거가 명확

하지 못한 연구기관 및 연구소·연수원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하여 이들 시설의 신·증설 입지를 규제하려는 것임.

라.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공단조성 허용지역을 현재 인구가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군에서 인구증가율이 3년간 지속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시·군으로 하여 대상지역 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6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국토계획국장, 전화번호503-73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변경내용·입법예고 1990.5.31

○개정안의 주요내용중 변경사항

당초(건설부공고제62호)	변경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권외곽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설치 허용업종및 규모를 개발유도권역안에서 개별공장의 자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권외곽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설치 허용업종 및 규모를 개발유도권역안에서 개별공장의 자유	유입지 허용업종을 현재 15개의외에 도시형업종190개를 추가하고, ·이하생략(변경없음)	입지허용업종을 현재 창업신설이 가능한 15개업종외에 수도권내에서 이전 신설하는 도시형업종 190개를 추가하고, ·이하생략(변경없음)

상식코너

都市住宅問題

(urban housing problem)

住宅問題는 量的 공급문제와 質的 改良問題로 구별된다. 前者는 주택수요에 供給이 따르지 못하는 絶對量의 부족이며, 後者는 經濟的 住宅問題라고도 하는데 住宅費 負擔能力이 떨어지기 때문에 住宅의 質的 水準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는 결국 사회전체적 여건으로는 좋은 住宅을 建築할 수 있으나, 需要者의 購買能力이 낮을 경우 發生한다. 그러나 이 兩者는 결국 하나의 都市社會的 現象의 表裏關係로 볼 수 있다.

제3섹터

(semi-public corporations)

제3섹터는 공공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섹터(公企業)와 제2섹터(民間企業)가 共同 出資하여 事業體를 만들고 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사업에 私企業의 자금과 그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국토종합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등의 프로젝트에는 이 목적이 강하게 표출된다.